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65호 2017. 5. 15(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75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84호 폐기 공인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75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석남체육공원 조성공사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6-9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열 람 내 용 :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비치)
5. 소유자 및 관계인, 수용재결 대상

연 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사업시행자 제시액(원)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구 석남동	산57-3	12	1,818,000	학교법인 신호학원	서구 서달로 58-16(석남동)			
2	서구 석남동	산57-5	303	59,842,500	학교법인 신호학원	서구 서달로 58-16(석남동)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7.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05.15.~ 2017.05.29. (초일 미산입 14일간)
8. 기타 : 공고(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560-4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84호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기사유

-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 세무업무 이관에 따른 미사용 공인

2. 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7년 5월 15일

3. 폐기공인 내역

- 붙임내역 참조

○ 폐기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폐기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2동민원전용2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017년 5월 15일	
가정2동장인/민원전용2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017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2동민원전용2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017년 5월 15일	
가좌2동장인/민원전용2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017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출장소전용1	세무업무 이관에 따른 미사용 공인	2017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청검단출장소장인 /민원전용1	세무업무 이관에 따른 미사용 공인	2017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5.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 고 기 간 : 2017. 5. 15. ~ 2017. 5. 29.(15일간)

■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인천83가7913외 20대 (“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4)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인천83가7913	최경*	2017.05.11	
2	64러3746	김순*	2017.05.11	
3	18러7054	송현*	2017.05.11	
4	58부3162	최경*	2017.05.11	
5	54구4205	이승*	2017.05.08	
6	66누3187	(주)그린아이씨*	2017.05.08	
7	05나3394	구자*	2017.05.08	
8	86구1546	김춘*	2017.05.08	
9	86러3240	방승*	2017.05.08	
10	20부6884	이용*	2017.05.08	
11	04다6500	김경*	2017.05.04	
12	05버7788	(주)갤러리아*	2017.05.04	
13	인천73아1417	양지고속관*(주)	2017.05.04	
14	25우2067	임바*	2017.05.02	
15	인천72다6102	오연*	2017.05.02	
16	28저5523	양귀*	2017.05.01	
17	28저5521	박종*	2017.05.01	2017.05.02. 해제
18	33모8556	홍광*	2017.05.01	
19	38부8033	(주)제시*	2017.04.28	
20	48주9970	(주)제시*	2017.04.28	
21	45두4822	(주)제시*	2017.04.28	
22	42주4417	나정*	2017.04.26	
23	60러2520	김영*	2017.04.26	
24	27무2047	이대*	2017.04.26	
25	경기72구2228	송병*	2017.04.25	
26	25다1687	이태*	2017.04.25	
27	93가8328	석인*	2017.04.24	
28	64소1984	김병*	2017.04.21	
29	19두7496	오운*	2017.04.21	
30	58거2212	김학*	2017.04.20	2017.04.20. 해제